

보도자료

심리정족수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사건

[2024헌사125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선 고]

헌법재판소는 2024년 10월 1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 중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24헌마900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 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인용]



2024. 10. 14.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4. 7. 3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국회 소추위원은 2024. 8. 5. 헌법재판소에 신청인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하였다(2024헌나1). 그런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하 ‘재판관’이라 한다) 9명 중 3명의 임기가 2024. 10. 17. 종료된다.
- 이에 신청인은 2024. 10. 10.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이 신청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24헌마900)함과 동시에 위 본안 사건의 종국 결정 선고 시까지 위 조항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 결정주문

-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 중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재판관의 공식 상태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24헌마900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의 종국 결정 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 관련법령

-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 이유의 요지

● 가처분 인용 요건

- 본안심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고, 헌법소원심판에서 문제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와 그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과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 하여 후자의 불이익이 전자의 불이익보다 클 경우 가처분을 인용할 수 있다.

● 가치분 인용 여부 - 적극

-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이 신청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본안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고, 3명의 재판관이 2024. 10. 17. 퇴임하면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발생이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가치분신청은 본안심판이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신청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는데,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다. 결국 신청인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고, 3명의 재판관 퇴임이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
- 가치분을 인용하더라도 이는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심리정족수에 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을 할 수도 있다. 다만 보다 신속한 결정을 위하여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기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하는 등 사건을 성숙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데 가치분신청을 기각하면, 그 후 본안심판의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이러한 절차를 제때에 진행하지 못하여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은 이미 침해된 이후이므로 이를 회복하기는 매우 어렵다. 임기제 하에서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은 당연히 예상되는 것임에도 재판관 공석의 문제가 반복하여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7명의 심리정족수에 대한 직무대행제도와 같은 제도적 보완 장치도 전무하다. 결국 이 사건에서 가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보다 가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
- 다만 이 사건에서는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가 문제되는 것이고 신청인이 실질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바도 이와 같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 중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에 한하여 그 효력을 정지함이 상당하다.